

한국콘텐츠진흥원과 쉐퍼드 멀린 릭터 & 햄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협력 협약서

한국콘텐츠진흥원과 쉐퍼드 멀린 릭터 & 햄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당사자간의
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업무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이 협약서는 양 기관의 교류·협력을 통하여 한국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,
한국 콘텐츠업계의 미국진출 및 쉐퍼드 멀린 릭터 & 해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
한국콘텐츠 업체 지원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력한다.

1. 한국콘텐츠의 미국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업무 논의
2.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접수된 미국진출 관련 우리 업계의 법률사안에 대한
자문 등 협력방안 논의
3. 기타 우리 콘텐츠의 미국 진출활성화에 법무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3조 이 협약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 기관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.

제4조 이 협약서는 양 기관의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.

제5조 이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의 상호 협력에 의하여
우호적으로 해결하며,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아니한다.

제6조 이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발생하며, 합의에 따라 연장하거나
수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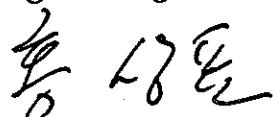
제7조 이 협약서는 2부 작성하며 양 기관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2년 11월 13일



SheppardMullin
쉐퍼드 멀린 릭터 & 햄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쉐퍼드멀린

원장 홍상표



대표 김병수

